

M&A를 생각한다면 꼭 알아야 할 기업결합

❖ 기업결합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주식 인수, 합병, 공동 투자회사 설립, 임원겸임, 영업 및 자산양수도, 경영위임 등을 포함한다. 본호에서는 그 중 주식인수에 의한 기업결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 기업결합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기업결합 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의 주식 20%(상장회사인 경우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상대회사가 기업결합대상회사 주식 20%(상장회사인 경우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기업결합대상회사 또는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 미만(상장회사의 경우 15%)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안 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업결합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상대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임원선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업결합신고를 하되 하면 기업결합이 허용되는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신고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

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특정한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 유무를 심사하여 그 기업결합을 금지시킬 수 있다.

❖ 기업결합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i) 관련시장을 확정하고, (ii) 기업결합에 의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iii)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iv)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순서로 기업결합 허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관련시장의 확정

관련시장이란 기업결합의 당사 회사들이 속하는 시장으로서, 거래대상(상품시장) 또는 거래지역(지역시장)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시장과 상용버스 시장은 구매의 목적, 특성, 경쟁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시장으로 인정된다.

❖ 지배관계의 형성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결합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기업결합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라도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하거나 상대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기업결합대상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등 기업결합대상회사가 상대회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면 지배관계를 인정한다.

치열한 자본주의 아래의 기업활동은 경쟁의 연속이다. 현재 세계 50대 기업 중 50년 전에도 존재하였던 기업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자본주의하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서로간의 연합, 협정, 결합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줄어들면 자연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만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상에서 기업결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 본다.

❖ 경쟁제한성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당사 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심사에 들어간다. 기업결합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인 '수직형 기업결합', 그리고 그 둘 이외의 결합인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분류된다.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신규 진입의 가능성 등을 주로 심사하고,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봉쇄효과를 주로 분석한다.

❖ 예외사유 해당 여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또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의 매각 등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사후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결합 자체는 인정하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계열회사인 포스틸을 통하여 강관 구매업체인 한국코아를 인수한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전기강관 공급시 한국코아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거나 가격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또는 다른 업체에게 인수전보다 공급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거

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다.

❖ 계열회사 편입

기업결합대상회사가 상대회사의 주식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상대회사는 기업결합대상회사의 계열회사로 분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회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지분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임원의 임면,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의 영향력, 인사교류, 자금거래 등 상대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계열회사에 해당할 수 있다.

❖ 계열회사간 거래의 공시

상대회사가 기업결합대상회사의 계열회사가 되는 경우, 양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격 등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도록 주의 기울여야 한다. 또한 양사간 자금·자산·인력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해야 한다.

글_변호사 엄재민

- 법무법인 화우(02-6003-7524, jmuhm@hwawoo.co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유럽경영대학원(Insead) 경영학석사(MBA)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